# 열처리검사 가이드

## (주) 한일로지스틱스

# Ⅰ. 실시배경

## 국제적 검역 실시 배경

이미 호주나 뉴질랜드와 같은 검역 선진국가에서는 일찍부터 목재포장재를 식물검역 대상으로 지정하여, 자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에 사용된 모든 목재포장재에 대해 MB훈증또는열처리 등의 소독처리를 요구해 왔다.

또한 EU,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의 국가에서도 목재포장재를 통해서 소나무재선충이나 유리알락하늘소와 같은 중요한 병해충이 유입되어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자, 해당 병해충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진 국가산 목재포장재에 대해 검역조치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FAO 산하의 식물검역관련 국제기구인 IPPC(국제식물보호협약) 사무국에서는 2000년도부터 목재포장재의 검역에 대한 국제기준 제정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으며, 2000. 6월 및 2001. 2월, 2차례에 걸친 목재포장재 관련 전문가 회의를 통해 목재포장재의 검역적 규제를 위한 국제기준(안)을 마련하였다.

# Ⅱ. 열처리검사

## 열처리 검사 절차

1. 열처리(56℃/ 30분) 실시 (열처리 시설자)

열처리시설자가 지정된 열처리 시설에서 열처리 실시

2. 열처리 소독작업 결과서 제출 (열처리 시설자)

열처리시설자가 열처리 소독작업 결과서(식검고시 2002-1호 별지 제4서식)에 목재 중심부온도 자동기록표를 첨부하여 처리건별로 관할지역 식물검역소 지출장소에 제출

3. 지출장소장은 열처리 표지 확인서 발부

열처리시설자는 열처리 건별 품목별(파레트, 나무상자, 판재 등) 처리수량, 공급수량, 재고량을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포장재에 열처리 표지

4. 목재포장재 열처리 관리대장 기록 (열처리시설자, 식물검역소 지출장소)

식물검역소 지출장소에서는 열처리 시설자별, 품목별(파레트, 나무상자, 판재 등)로 목재포장재 열처리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처리수량, 공급량, 재고량을 기록

5. 수출식물검사 신청서 제출 (열처리 시설자)

열처리 시설자는 수출식물검사신청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열처리 소독작업결과서 사본과 원자재 소요량 확인서(판재, 각재 등으로 나무상자 등을 만든 경우)를 첨부하여 식물검역소 지출장소에 신청

6. 수출식물검사 (식물검역소 지출장소)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사신청서 수량과 목재포장재 열처리 관리대장과 대조하여 확인 검사
열처리 관리대장에 재고정리

7. 수출합격증명서 발급

수출식물 검사신청자가 직접 위생증 원본 수령 (FAX 등 불가)

## 8. 열처리증명서(certificate)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Sample

# PHYTOSANITARY CERTIFICATE

Jungbu R.O. Plant Quarantine Service No : 20-03004390

TO : The Plant Protection Organization of China

## DESCRIPTION OF CONSIGNMENT

Name and address of exporter : INDUSTRIAL CO.,LTD.
KWALIM-DONG, SHIHEUNG-CITY, KYUNGGI-DO, SHOUL KOREA

Declared name and address of consignee : HUIZHOU SAMSUNG ELECTRONICS CO.,LTD.
INDUSTRIAL COMPLEX CHENJIANG TOWN HUIZHOU GUANGDONG CHINA

Number and description of packages :

Distinguishing marks : NIL

Place of origin : Republic of Korea

Declared means of conveyance : Ship Cargo

Declared point of entry : HONG KONG

Name of produce and quantity declared :
WOODEN BOX, 14 pcs

Botanical name of plants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plants, plant products or other regulated articles described herein have been inspected and/or tested according to appropriate offical procedures and are considered to be free from the quarantine pests specified by the importing contracting party and to conform with the current phytosanitary requirements of the importing contracting party, including those for regulated non-quarantine pests.

## ADDITIONAL DECLARATION

The wood packing material in this shipment has been heat treated at designated facilities by NPQS to achieve a minimum wood core temperature of 56℃ for more than 30 minutes

## DISINFESTATION AND/OR DISINFECTION TREATMENT

Date : Mar. 05. 2003 - Mar. 05. 2003
Chemical(active ingredient) : NIL
Concentration : NIL

Treatment : HEAT TREATMENT
Duration and temperature : 00:30 , 56℃
Additional information : NIL

hanil wooden packing

MINISTRY OF AGRICULTURE & FORESTRY N.P.Q.S KOREA

Place of issue : Jungbu Regional Office, Korea

Name of authorized officer : WOON DEOK KI

Date : Apr. 12. 2003 (Signature)

Sample

No financial liability with respect to this certificate shall attach to the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or to any of its officers or representatives.

# Ⅲ. 열처리 절차

## 목재포장재열처리검사 처리절차 세부 실시도

**1. 목적**

열처리한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사 처리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목재포장재의 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자 함

**2. 처리절차 세부요령**

가. 열처리 소독작업 결과서 접수

열처리 소독작업 결과서(식검고시 제2002-1호 별지 제4호서식)는 목재 중심부 온도 자동기록표를 첨부하여 열처리 건별로 접수한다.

나. 열처리 품목별 수량 확인

열처리 건별로 품목별(파레트, 나무상자, 판재, 각재 등) 수량을 확인하되 파레트 등 완제품인 경우에는 개단위로 하고, 반제품(단순조립으로 완제품 제작 가능)일 경우에는 완제품 조립예정 개단위로, 각재, 판재 등 원자재일 경우에는 전체 단위수량(㎥, 또는 재 등)으로 기재한다.

다. 열처리 표지확인서 발부

수출용 목재포장재 열처리 규정(이하 "열처리 규정" 이라 한다.) 제7조에 의거 열처리 건별로 열처리 표지확인서를 발부하여 목재포장재에 열처리 표지토록 한다.

라. 목재포장재 열처리 관리대장 정리

지출장소장은 관할구역의 열처리 시설자별로 품목별(파레트, 나무상자, 판재, 각재 등)로 목재포장재 열처리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서식1)을 비치하고 처리수량에 대한 수출업체별 공급량(수출량)과 재고량을 기록 유지한다.

마. 수출식물 검사신청서 접수 및 처리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사는 수출입업자 또는 열처리 시설자 등으로부터 검사신청서를 받는다. 검사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해 목재포장재에 대한 열처리 시설자가 처리한 열처리 소독작업 결과서 사본과 원자재 소요량 확인서(판재, 각재 등을 사용하여 나무상자 등을 만든 경우)(서식2)를 첨부토록 하고 민원접수증을 교부한다.

바. 목재포장재 검사 등

| 열처리 시설이 관할구역내에 소재하는 경우 | 열처리 시설이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경우 |
|---|---|
| 가) 식물방역관은 수출검사신청서 수량과 열처리 소독작업 결과서(사본)을 관리대장과 대조하여 확인한다.<br><br>나) 관리대장을 확인한 결과, 열처리 시설자의 목재포장재 열처리 재고량이 검사신청 수량과 같거나 많은 경우에는 합격 처리한다.<br><br>다) 합격 처리한 식물방역관은 관리대장을 정리하여 재고량을 기록한다.<br><br>라) 열처리 식물상태별 수량 확인 방법 등<br>파레트, 나무상자 등 완제품과 단순조립으로 완제품이 제작가능한 반제품(와이어통 등)은 개단위로 공급량과 재고량을 정리 확인한다.<br>판재, 각재 등 원자재의 경우는 원자재 소요량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재고량을 정리한다. | 가) 지출장소장은 당해 포장재를 열처리한 시설지역의 관할 지출장소장에게 열처리 여부를 붙임 서식3에 의해 FAX 또는 E-mail 등으로 확인 의뢰하고 확인 결과에 의거 처리한다.<br><br>나) 목재포장재 열처리 확인을 요구받은 지? 출장소장은 비치하고 있는 당해 열처리시설자의 관리대장을 확인하여 결과를 FAX 등으로 붙임 서식4에 의거 통보하고 합격 수량을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

사. 분할신청할 때 등의 조치사항

지출장소장은 1회 열처리한 전체 수량을 일시에 수출하지 아니하고 분할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열처리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열처리되지 아니한 제품과 구별이 되도록 적재토록 한다.

아. 열처리시설 확인 점검

지출장소장은 관내 검사확인된 열처리 시설에 대하여 열처리 규정 제8조에 의거 시설상태, 열처리 표지의 적절성, 관리대장과 재고량, 처리한 제품과 처리되지 아니한 제품이 분리 적재, 열처리 표지 여부 등을 확인토록 한다.

자. 검사결과 처리

관리대장에 의한 서류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합격 처리한다.

차. 기타사항

이 요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입식물검역처리 세부요령과 열처리 규정 등 식물검역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Ⅳ. 열처리 규정

## 수출용 목재포장재 열처리 규정

국립식물검역소 고시 제 2002 - 1호 (2002년 1월 19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출용 목재포장재의 열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수출용 목재포장재 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목재포장재"라 함은 파레트, 나무상자, 받침목, 충진재 등 화물을 지지, 보호 또는 운반하는데 이용되는 목재 또는 목재산물을 말한다.

"열처리(Heat Treatment)"라 함은 일정 온도에 도달하여 일정 시간동안 목재포장재를 가열소독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열처리시설"이라 함은 목재포장재를 열처리하는 시설을 말하며, "열처리 시설자"라 함은 열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열처리시설의 요건)

열처리시설 요건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열처리시설의 검사 신청)

열처리시설의 검사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열처리시설 검사 확인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식물검역소장(이하 "식물검역소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열처리시설 검사 확인 및 결과 통보)

열처리시설 검사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식물검역소장은 별표 1의 열처리시설 확인방법에 따라 별표 2의 열처리시설 요건을 검사 확인하여야 한다.

식물검역소장은 검사 확인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열처리시설 검사 확인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열처리시설의 관리)

열처리 시설자는 검사 확인된 열처리시설을 이용하여 목재포장재를 열처리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목재포장재 열처리 작업일지에 그 처리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열처리의 증명)

식물방역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열처리 소독작업 결과서 확인으로 현장검사, 실험실검사 및 열처

리 이행결과 확인 등을 생략하고 아래의 열처리사항을 수출식물검사합격증명서에 부기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열처리 표지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선적물의 목재포장재는 국립식물검역소에 의해 지정된 시설에서 목재중심부의 온도가 최저 ℃에서 분 이상 열처리되었음" (The wood packing material in this shipment has been heat treated at designated facilities by NPQS to achieve a minimum wood core temperature of ℃ for more than minutes)
열처리시설자는 열처리 표지에 의한 열처리 증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식물검역소 지소 또는 출장소로부터 열처리 표지 확인서를 받은 후 열처리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8조(열처리시설 확인 점검)
식물검역소 지소 또는 출장소장(이하 "지출장소장"이라 한다)은 관내 검사 확인된 열처리 시설에 대하여 시설 상태, 열처리 표지의 적절성 등을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필요시 수시 점검을 하여 그 결과를 식물검역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출장소장은 정기점검시 열처리 시설자에 대하여 목재포장재의 식물위생요건 및 수입국의 요구사항 등을 홍보 또는 공지하여 열처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변경사항 통보)
열처리 시설자는 열처리시설이 파손 또는 개조되었거나, 열처리표지가 파손 또는 분실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식물검역소장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식물검역소장은 전항을 통보 받은 때에는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검사 확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열처리증명의 중단)
식물검역소장은 열처리 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식물방역관으로 하여금 당해 열처리 시설에 대하여 제7조제1항의 수출식물검사합격증명서 및 열처리 표지확인서의 발급을 중단하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및 제9조제2항의 확인 결과 열처리시설 기준에 미달된 경우.
제6조를 위반한 경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열처리 증명을 한 경우.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Ⅴ. 국제적 규정

## 열처리 국제적 현황과 전망

### IPPC 국제기준의 주요 내용

**1. 적용대상**

침엽수 목재포장재와 비-침엽수 생목재 목재포장재(짐깔개 포함)

**2. 요 건**

목재포장재는 수피가 제거된 나무로 제작되어야 함.

다음 중 한가지의 소독처리를 실시하고 포장재에 아래의 증명표식을 부착

1) 목재 중심부의 온도 56℃에서 30분간 열처리

2) MB 훈증

**3. 요건 불이행시의 조치**

다음과 같은 경우 소독, 폐기(소각, 매립, 가공 등) 또는 반입금지 조치

목재포장재에 소독처리 표식이 없거나 검역병해충에 감염되었음이 발견

목재포장재에 소독처리 표식이 있으나 살아있는 병해충의 증거가 발견

**4. 향후 전망**

목재포장재에 대한 IPPC 국제기준은 제4차 ICPM회의(2002. 3월)에 상정되어 채택여부를 결정하게 됨.

현재까지는 국가별 검역요건이 상이하나, IPPC 차원에서 국제기준이 채택되면 동 기준에 따라 통일된 규제조치 사용이 장려될 것으로 전망됨.

**5. 우리나라산 목재포장재에 대한 각국의 요구 내용 요약**

| 국가별 | 대상품목 | 검역요건 | 비고 |
|---|---|---|---|
| 미국 | 목재<br>포장재 | 수피가 없고, 미가공 목재류가 아닌 물품에 사용된 경우<br>- 수피 및 살아있는 병해충이 없음을 증명<br><br>수피가 없고, 미가공 목재류에 사용된 경우<br>- 수피 및 살아있는 병해충이 없으며 소독하였음을 증명<br><br>수피가 남아있는 경우, 열처 리(71℃/75분), MB 훈증, 화학적 방부처리 중 한가지를 실시 하고 증명서 | 목재중심온도기준<br>71도-75분가열 |

| | | 첨부 | |
|---|---|---|---|
| 캐나다 | 목재<br>포장재 | 승인된 소독처리방법<br>- 열처리요건: 목재중심부온도56도에서 30분간<br>열처리하여 증명서 발급<br>- MB훈증<br>- 기타 CFIA(검역당국) 가승인한방법<br>- 불이행시 : 폐기또는소독후 반송 조치 | 검역소공고일 :<br>2003.04.29<br>시행일 :<br>2003년12월1일<br>부터 시행<br>담당 : 이인한 |
| EU | 침엽수<br>포장재 | 수피와 벌레구멍이 없고 수분함량 20% 이하 | 함수율20%이하 |
| 호주 | 목재<br>포장재 | 다음중 한가지를 실시하고 식물위생증명서나 소독증명서에 부기<br>- 훈증(MB, Sulphuryl fluoride)<br>- 열처리(74℃ 이상/처리시간은 두께에 따라 다름)<br>- 화학적 방부처리<br><br>ADDITIONAL DECLARATION<br>- WOOD PACKINGS IN THIS CONSIGNMENT ARE 50 ~ 75mm IN THICKNESS AND WERE HEAT TREATED FOR 8 HOURS SINCE THE WOOD CORE TEMPERATURE REACHED 74℃ ON 23 AUGUST 2002 | 목재중심온도74도<br>25m/m까지=4h<br>50m/m까지=6h<br>75m/m까지=8h<br>100m/m까지=10h<br>150m/m까지=14h<br>200m/m까지=18h<br>담당 : 박용건 |
| 뉴질랜드 | 목재<br>포장재 | 수출전 21일 이내에 다음중 한가지를 실시하고 식물위생증명서나 소독증명서에 부기<br>- 훈증(MB, Sulphuryl fluoride, 인화수소)<br>- 열처리(70℃ 이상/처리시간은 두께에 따라 다름)<br>- 화학적 방부처리 | 건조실내부온도70도<br>25m/m까지=4h<br>50m/m까지=6h<br>75m/m까지=8h<br>100m/m까지=10h<br>150m/m까지=14h<br>250m/m까지=22h<br>300m/m까지=26h |
| 중국 | 침엽수<br>포장재 | 열처리(56℃/30분) 또는 기타 승인된 방법으로 소독하고 식물위생증명서에 부기 | 중심온도 56도<br>-30분 |
| 핀란드 | 침엽수<br>포장재 | 다음중 한가지를 실시하고 식물위생증명서에 부기<br>- 수피와 벌레구멍이 없으며 수분함량 20% 이하<br>- 열처리(56℃/30분)<br>- KD처리(수분 20%이하)<br>- 적절한 소독제로 훈증 | 목재중심온도기준<br>56도 - 30분 가열<br>2000. 5. 31 |
| 오스트리아 | 활엽수<br>포장재 | 수피, 벌레구멍 없으며, 수분함량 20% 이하로 KD처리 | 함수율20%이하 |

| | | | |
|---|---|---|---|
| 브라질 | 목재<br>포장재 | 열처리<br>-중심온도: 56도<br>-시간: 30분<br><br>선적 전 15일 이내에 MB 등으로 훈증하고 식물위생증명서에 부기 | 2000. 초 |
| 러시아 | 목재<br>포장재 | 식물위생증명서 첨부 | 열처리증명서첨부 |

*HT(열처리) : Heat Treatment *B(훈증) : Methyl Bromide *KD(건조) : Kiln Dry

# Ⅵ. 국제무역에서 적용되는 목재 포장재 검역 규정

## 1. 목재 포장재의 검역 규제 배경

### 1) 관련 규정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 요령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2023-14호)

### 2) 추진 배경

목재 포장재에 의한 병해충의 국가간 이동 방지를 위함 (국제기준 / ISPM No.15)

### 3) 용어의 정의

목재 포장재 : 파렛트, 나무상자, 받침목 등 화물을지지, 보호, 운반에 사용된 목재
(제외 : 합판, 파티클보드, 베니어 등 가공된 목재로 제조된 포장재)

### 4) 소독방법과 마크

- 소독방법 : 열처리(Heat Treatment) 또는 MB훈증(Methyl Bromide)
  (소독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 신고된 열처리업체 또는 방제업체가 실시
- 소독처리 마크 : 소독사실을 증명하는 국제인증(식물보호협약 / IPPC) 공식 스탬프

### 5) 목재 포장재 소독처리 및 증명방법

(1) 소독처리 : 수피가 제거된 목재 포장재를 열처리 또는 MB훈증
(2) 증명방법 : 소독처리 마크 표지(소독업자) 또는 식물검역증(검역본부) 첨부
★ 마크표지(기본) 및 식물검역증명서 요구 등 각국의 규정에 따라야 함.

### 6) 수출시의 목재 포장재 사용 요령 (수출업체 해당사항)

(1) 목재포장재 사용시 반드시 소독(HT 또는 MB)하고 소독처리 마크가 표지된 것만 사용
(2) 증명방법은 소독처리 마크와 추가적으로 식물검역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 7) 수입시의 목재 포장재 검역 방법 (수입업체 해당사항)

(1) 수입요건 : 국제 기준에 따라 소독하고 소독처리 마크가 표지 되어야 함.
(2) 신고 대상 : 소독 마크가 없는 경우 수입업자가 관할 검역본부에 지체없이 신고해야 함.
(3) 신고 방법 : UNI-PASS(관세청) → 요건 신청 → 목재 포장재 신고 (미신고 적발 시 과태료 부과)
★ 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소독 후 소독 마크가 표지된 경우 신고 불필요

## 2. 소독처리 마크와 마크 표지 방법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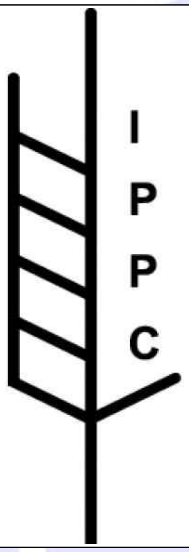 | KR - OOOOOO<br>HT 또는 MB |

- Symbol (로고) : IPPC 에서 승인한 심볼
- KR (국가코드) : ISO의 2자리 국가 코드 (Korea → KR)
  - OOOOOO : 소독업체 코드
- 검정색, 청색 등으로 2개면 이상에 표시하여야 함.

※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www.qia.go.kr) 또는 식물방제과(담당 : 054-912-06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각국의 목재포장재 소독 및 증명방법

'22. 12. 26 기준

| 대륙 | 국가 | 시행일 | <소독방법> 1가지 선택 | | <증명방법> 1가지 선택 | | | 기타 |
|---|---|---|---|---|---|---|---|---|
| | | | 열처리 | MB 훈증 | 소독 마크 | 식물 위생 증명서 | 소독 증명서 | |
| 아시아 | 대만 | 2011.03.31. | ○ | ○ | ○ | | | |
| | 몽골 | - | ○ | ○ | ○ | | | |
| | 라오스 | 2006.01.23 | ○ | ○ | ○ | | | |
| | 레바논 | 2006.03.09 | ○ | ○ | ○ | | | |
| | 말레이시아 | 2010.01.01 | ○ | ○ | ○ | | | |
| | 베트남 | 2015.01.01 | ○ | ○ | ○ | | | |
| | 방글라데시 | 2015.11.26 | ○ | ○ | ○ | ○ | ○ | |
| | 스리랑카 | 2010.03.08 | ○ | ○ | ○ | | | |
| | 시리아 | 2006.04.01 | ○ | ○ | ○ | | | |
| | 싱가포르 | 2013.07.11 | ○ | ○ | ○ | 싱가포르로 수출화물 목재포장재 수출시 ISPM 15를 따르지 않아도 수출 가능함 | | |
| | 아랍에미레이트 | 2006.01.01 | ○ | ○ | ○ | | | |
| | 오만 | 2006.12.01 | ○ | ○ | ○ | | | |
| | 요르단 | 2005.11.17 | ○ | ○ | ○ | | | |
| | 우즈베키스탄 | 2007.01.01 | ○ | ○ | ○ | ○ | | |
| | 이란 | 2010.01.01 | ○ | ○ | ○ | | | |
| | 이스라엘 | 2009.10.01 | ○ | ○ | ○ | | | |
| | 인도 | 2004.11.01 | ○ | ○ | ○ | ○ | | |
| | 인도네시아 | 2009.09.01 | ○ | ○ | ○ | | | |
| | 일본 | 2007.04.01 | ○ | ○ | ○ | | | |
| | 중국 | 2002.01.01 | ○ | ○ | ○ | | | |
| | 캄보디아 | - | ○ | ○ | ○ | | | |
| | 태국 | 2009.08.01 | ○ | ○ | ○ | | | |
| | 필리핀 | 2005.01.01 | ○ | ○ | ○ | | | |
| | 한국 | 2005.06.01 | ○ | ○ | ○ | | | |
| 오세아니아 | 뉴질랜드 | 2003.04.16. | ○ | ○ | ○ | ○ | ○ | |
| | 뉴칼레도니아 | 2006.06.01 | ○ | ○ | ○ | | | |
| | 사모아 | 2005.09.16 | ○ | ○ | ○ | ○ | ○ | |
| | 폴리네시아 | 2007.09.01 | ○ | ○ | ○ | | | |
| | 피지 | - | ○ | ○ | ○ | | | |
| | 호주 | 2004.09.01 | ○ | ○ | ○ | ○ | | |
| 유럽 | 노르웨이 | 2008.01.01 | ○ | ○ | ○ | ○ | | |
| | 러시아 | 2009.07.15 | ○ | ○ | ○ | | | |
| | 몬테네그로 | 2010.01.14 | ○ | ○ | ○ | | | |

| | | | | | | | | |
|---|---|---|---|---|---|---|---|---|
| 유럽 | 벨라루스 | 2005.12.25 | ○ | ○ | ○ | | | |
| |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 2015.05.22 | ○ | ○ | ○ | | | |
| | 세르비아 | 2006.06.01 | ○ | - | ○ | | | |
| | 스위스 | 2005.04.01 | ○ | ○ | ○ | | | |
| | 영국 | 2005.03.01 | ○ | ○ | ○ | | | |
| | 우크라이나 | 2006.01.24 | ○ | ○ | ○ | | | |
| | 유럽연합(EU) | 2005.03.01 | ○ | ○ | ○ | | | |
| | 조지아 | 2010.01.25 | ○ | ○ | ○ | | | |
| | 카자흐스탄 | 2009.08.01 | ○ | ○ | ○ | | | |
| | 크로아티아 | 2007.01.01 | ○ | ○ | ○ | | | |
| | 터키 | 2005.01.01 | ○ | ○ | ○ | | | |
| 북중미 | 미국 | 2005.09.16. | ○ | ○ | ○ | | | |
| | 버진아일랜드 | 2005.09.16 | ○ | ○ | ○ | | | |
| | 캐나다 | 2005.09.16 | ○ | ○ | ○ | | | |
| | 푸에르토리코 | 2005.09.16 | ○ | ○ | ○ | | | |
| 중남미 | 가이아나 | 2005.01.01 | ○ | ○ | ○ | | | |
| | 과테말라 | 2005.09.16 | ○ | ○ | ○ | | | |
| | 니카라과 | - | ○ | ○ | ○ | | | |
| | 도미니카공화국 | 2006.07.01. | ○ | ○ | ○ | | | |
| | 멕시코 | 2005.09.16 | ○ | ○ | ○ | | | |
| | 베네수엘라 | 2005.06.01 | ○ | ○ | ○ | | | |
| | 볼리비아 | 2005.07.24 | ○ | ○ | ○ | | | |
| | 브라질 | 2005.06.01 | ○ | ○ | ○ | | | |
| | 아르헨티나 | 2005.06.01 | ○ | ○ | ○ | | | |
| | 에콰도르 | 2005.09.30 | ○ | ○ | ○ | | | |
| | 엘살바도르 | 2004.05.01 | ○ | ○ | ○ | | | |
| | 온두라스 | 2006.02.25 | ○ | ○ | ○ | | | |
| | 자메이카 | 2007.10.20 | ○ | ○ | ○ | | | |
| | 칠레 | 2005.06.01 | ○ | ○ | ○ | | | |
| | 코스타리카 | 2006.03.19 | ○ | ○ | ○ | | | |
| | 콜롬비아 | 2004.06.03 | ○ | ○ | ○ | | | |
| | 쿠바 | 2008.06.25 | ○ | ○ | ○ | | | |
| | 트리니다드 토바고 | 2005.09.21 | ○ | ○ | ○ | | | |
| | 파나마 | 2005.02.17 | ○ | ○ | ○ | | | |
| | 파라과이 | 2005.06.28 | ○ | ○ | ○ | | | |
| | 페루 | 2005.06.01 | ○ | ○ | ○ | | | |
| 아프리카 | 나이지리아 | 2004.09.30 | ○ | ○ | ○ | ○ | | |
| | 남아프리카 공화국 | 2005.01.01 | ○ | ○ | ○ | | | |
| | 레소토 | 2012.01.01 | ○ | ○ | ○ | | | |

| | | | | | | | | |
|---|---|---|---|---|---|---|---|---|
| 아프리카 | 말라위 | 2015.11.09 | ○ | ○ | ○ | | | |
| | 모로코 | 2013.05.01 | ○ | ○ | ○ | | | |
| | 세네갈 | 2010.08.15 | ○ | ○ | ○ | | | |
| | 세이셀 | 2006.03.01 | ○ | ○ | ○ | | | |
| | 알제리 | 2010.04.01 | ○ | ○ | ○ | | | |
| | 이집트 | 2005.10.01 | ○ | ○ | ○ | | | |
| | 카메룬 | 2013.06.27 | ○ | ○ | ○ | | | |
| | 케냐 | 2006.01.01 | ○ | ○ | ○ | | | |
| | 탄자니아 | - | ○ | ○ | ○ | | | |
| ★ EU 연합 ('22. 12월 기준)<br>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사이프러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 | | | | | | |